

瑞山市담배自動販賣機設置制限條例廢止條例案  
**審 查 報 告 書**

## 1. 審 查 經 過

가. 提出日字 : 1999. 7. 16

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1999. 7. 19

라. 上程日字 : 1999. 7. 29

## 2. 提 案 說 明 要 旨 (提 案 說 明 : 地 域 經 濟 課 長 文 哲 柱)

### 가. 廢 止 理 由

- 현행 「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」의 규정에 의거 담배 자동판매기는 서산시 전역에 설치하되
  - 중·고등학교의 정문 및 담장으로부터 200미터 미만에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
- 지난 '98.2.24일 개정된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
  -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임.

## 나. 主要骨子

-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는 이를 폐지함.

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현재 담배자동판매기는 서산시 전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
  - 현행 「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」에 의거 “중·고등학교의 정문 및 담장으로부터 200미터 미만”에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제하고 있으나.
- 이는 학교보건법 제5조,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, 제4조의2에서 “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
  -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수 없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
  -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.

## 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## 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## 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1 호
의 결 년 월 일	1999. . . (제 회)

#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7. 16.

#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 18.

제출자 : 서산시장

## 1. 폐지이유

- 학교보건법제5조, 제6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, 제4조의 2에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('98. 2. 24) 시행됨에 따라
- 조례('95. 3. 8 제정)로 제한구역을 정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는 이를 폐지함.

## 3. 참 고

- 서산시규제개혁심의회
  - 심의일시 : '99. 6. 23
  - 결 과 : 폐지

서산시 조례 제 호

##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

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